

[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약관 신규조문 대비표('21.03)

시행일: 2021.03.25

현 행	개 정	비 고
<p align="center"><u><신 설></u></p>	<p>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p>	<p>•조항신설</p>
<p align="center"><u><신 설></u></p>	<p>제17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p>
<p>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p> <p>2. 고객의 예탁재산 인출로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p>	<p>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p>	<p>•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신설에 따른 •순번이동</p>

현 행	개 정	비 고
<p>경우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필요경비의 인출로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고객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신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 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 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p>	<p>2. 고객의 예탁재산 인출로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필요경비의 인출로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고객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신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 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 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p> <p>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p>	<p>제1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p> <p>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p>	

현 행	개 정	비 고
<p>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p> <p>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3조에 의한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 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p> <p>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p> <p>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p> <p>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3조에 의한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 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p> <p>제21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p> <p>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비 고
<p>제22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다.</p> <p>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4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다.</p> <p>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p> <p><별첨></p> <p>1. 제1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p> <p>-연체이자율: 연11%,</p>	<p>•회사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p>